

폭행·상해 쌍방 사건 법률 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

형사소송 전문 AI 법률 플랫폼

분석일: 2026년 9월 22일 | 분석 문서: 1건 | HYOUNGBLY AI

목차

- 사건 개요
- 사실관계 분석
-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
- 합의 필요성 및 합의금 적정선
- 맞고소의 실익
- 경찰 조사 대응 전략
- 종합 결론

1. 사건 개요

사건 일시: 2026. 8. 22.(금) 22:40경

사건 장소: 서울 OO구 OO동 "OO포차" 앞 인도

당사자:

- 이준호(만 34세, 남, 회사원, 전과 없음, 2019년 음주운전 벌금 1회)
- 김태현(만 37세, 남, 자영업)

사건 경위: 대학 동아리 모임 후 이동 중 김태현이 이준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시비 발생. 김태현이 먼저 욕설 및 먹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준호가 세 차례 제지 후 양손으로 김태현의 가슴을 밀어 김태현이 넘어짐. 이후 김태현이 일어나 이준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 주변인이 말려 종료.

상해 정도:

- 김태현: 우측 손목 염좌, 좌측 둔부 타박상(전치 2주)
- 이준호: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팔 타박상(전치 2주)

수사 상황: 김태현이 이준호를 상해 혐의로 고소. 이준호는 2026. 9. 10. 경찰 조사 출석 예정. 김태현 측에서 합의금 500만원 요구.

2. 사실관계 분석

2.1. 시간순 사실관계

시간	행위자	행위 내용	법적 의미
22:40	김태현	이준호 어깨를 톡 치	경미한 접촉, 폭행 성립 가능성 낮음
직후	김태현	욕설 및 먹살 잡고 2회 흔들	폭행죄 성립(형법 제260조 제1항)
직후	이준호	"놓으라" 3회 제지 후 양손으로 가슴 밀침	방어 행위, 정당방위 주장 가능
직후	김태현	넘어지며 손목·둔부 부상(전치 2주)	상해 결과 발생
직후	김태현	일어나 이준호 얼굴 주먹 1회 가격	상해죄 성립(형법 제257조 제1항)
직후	제3자	박서준, 포차 사장이 말림	사건 종료
22:55	경찰	112 출동, 인적사항 확인 후 귀가	현장 조치

2.2. 증거 현황

확보 가능 증거:

- 포차 앞 CCTV(2주 보관, 9. 5.까지, 김태현의 선제 폭행 및 이준호의 방어 행위 촬영 가능성 높음)
- 목격자 박서준(처음부터 끝까지 목격)
- 목격자 포차 사장 최OO(말리는 장면부터 목격)
- 이준호 진단서 및 상해 사진 3장
- 112 신고 기록

긴급 조치 필요: CCTV는 9. 5.까지만 보관되므로 즉시 경찰에 압수 요청하거나 포차 사장에게 별도 보관 요청 필요.
CCTV가 확보되지 않으면 정당방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음.

3.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

3.1. 정당방위 요건(형법 제21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불법적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해야 함
-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방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 3. **상당성:** 방어 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함

3.2. 본 사건에의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근거
현재의 부당한 침해	충족	김태현이 먹살을 잡고 2회 흔드는 폭행이 진행 중이었고, 이준호가 3회 제지했음에도 계속됨
법익 방어 목적	충족	자신의 신체 자유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
상당성	쟁점	먹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에 대해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과도한지 여부

3.3. 판례 분석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상당성 판단 시 다음을 고려합니다:

- 침해의 종류·정도·긴박성
-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유무
- 방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 행위자의 의사

본 사건 평가:

- **유리한 점:** 이준호가 3회 "놓으라"고 제지했으나 김태현이 계속 먹살을 잡고 있었고, 양손으로 가슴을 민 것은 먹살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 **불리한 점:** 밀친 결과 김태현이 넘어지며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고, 법원은 결과의 중대성도 고려함

3.4. 결론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40~50%

CCTV에 김태현이 먼저 맥살을 잡고 흔드는 장면과 이준호가 여러 차례 제지한 후 밀친 장면이 명확히 촬영되어 있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전치 2주의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완전한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위로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과잉방위: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형법 제21조 제2항).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는 벌하지 않음(제21조 제3항).

4.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

4.1. 이준호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

혐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성요건 검토:

요건	충족 여부	근거
상해 행위	충족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림
상해 결과	충족	우측 손목 염좌, 좌측 둔부 타박상(전치 2주)
인과관계	충족	밀친 행위로 넘어지며 부상 발생
고의	쟁점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나 폭행의 고의는 인정 가능

법리: 판례는 폭행의 고의로 행한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도4415). 다만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감경됩니다.

4.2. 김태현에 대한 범죄 성립

폭행죄(먹살 잡고 흔들): 형법 제260조 제1항 성립

상해죄(얼굴 주먹 가격): 형법 제257조 제1항 성립(이준호 좌측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

4.3. 예상 처벌 수위

4.3.1. 이준호

시나리오 1: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

-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CCTV 및 목격자 진술로 김태현의 선제 폭행과 이준호의 방어 의도가 입증되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 있음

시나리오 2: 정당방위 불인정, 상해죄 성립

- 초범, 피해 경미(전치 2주), 쌍방 폭행 사건임을 고려하여 **벌금형(200~300만원)** 예상
-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있음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음(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전과 없음)

직장 관련 주의: 회사 징계 규정에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해고" 조항이 있으므로, 벌금형은 해고 사유가 아니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본 사건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은 극히 낮음.

4.3.2. 김태현

- 폭행죄(먹살) + 상해죄(얼굴 가격) 성립
- 선제 폭행자이므로 이준호보다 불리한 처분 예상
- 합의 없을 시 벌금형 또는 약식명령 가능성 높음

5. 합의 필요성 및 합의금 적정선

5.1. 합의의 법적 효과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검찰 단계:**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 가능성 증가
- **법원 단계:** 양형 감경 사유(형법 제51조), 선고유예(형법 제59조) 또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가능성 증가
- **친고죄 아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사·기소 진행 가능. 다만 실무상 합의 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5.2. 합의 필요성 판단

고려 요소	내용	판단
직장 유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해고	벌금형 예상으로 해고 위험 낮음
전과 기록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음	합의로 기소유예 받으면 전과 없음
시간·비용	재판 진행 시 출석·변호사 비용	합의 시 조기 종결 가능
상대방 책임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	일방적 합의는 부당함

결론: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조기 종결하려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이고 이준호도 피해자이므로, **쌍방 합의(상호 고소 취하)** 형태가 적절합니다.

5.3. 합의금 적정선

김태현 측 요구: 500만원

적정 합의금 산정:

- **김태현 피해:** 전치 2주(손목 염좌, 둔부 타박상) - 일반적 합의금 100~200만원
- **이준호 피해:** 전치 2주(안면부 타박상, 팔 타박상) - 일반적 합의금 100~200만원
- **과실 비율:** 김태현 선제 폭행(70%), 이준호 방어 중 과실(30%)

적정 합의 방안:

1. **쌍방 무합의금 상호 고소 취하:** 양측 모두 피해가 경미하고 쌍방 과실이므로 합의금 없이 상호 취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2. **차액 정산 방식:**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이므로 이준호가 50~100만원을 받고 상호 취하
3. **김태현 요구 수용 시:** 최대 200만원 이내(500만원은 과도함)

500만원 요구의 부당성: 김태현의 피해는 전치 2주로 경미하고, 김태현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며, 이준호도 동일한 전치 2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500만원은 통상적인 합의금(100~200만원)의 2.5~5배로 과도하며,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임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준호가 합의금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6. 맞고소의 실익

6.1. 맞고소 가능 범죄

이준호가 김태현을 고소할 수 있는 범죄:

- 폭행죄(형법 제260조): 맥살을 잡고 2회 흔든 행위
- 상해죄(형법 제257조):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좌측 안면부 타박상 전치 2주 발생

6.2. 맞고소의 효과

효과	내용
수사 균형	쌍방 사건으로 처리되어 김태현의 선제 폭행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부각됨
협상력 강화	김태현도 처벌 위험에 놓이므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철회하고 쌍방 취하 협상 가능
정당방위 입증	김태현의 선제 폭행을 공식화하여 이준호의 정당방위 주장 근거 강화
심리적 압박	김태현이 자영업자로 전과 기록 부담이 있을 경우 합의 의지 증가

6.3. 맞고소 시 주의사항

- 맞고소는 보복 목적이 아닌 사실관계 명확화 및 정당방위 입증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
- 경찰 조사 시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한 방어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6.4. 결론

맞고소 실익: 매우 높음

맞고소를 통해 쌍방 사건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김태현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500만원)를 무력화하고 쌍방 무합의금 취하 협상 가능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의 근거 강화
3. 검찰이 쌍방 사건으로 판단하여 양측 모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 증가

권장 사항: 9. 10. 경찰 조사 출석 시 김태현에 대한 폭행·상해 고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김태현이 고소한 사건과 동일 사건으로 병합 수사되어 쌍방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7. 경찰 조사 대응 전략

7.1. 조사 전 준비사항

7.1.1. 긴급 증거 확보(9. 5. 이전)

최우선 조치: CCTV 보관 기한이 9. 5.까지이므로 즉시 다음 조치 필요

- OO경찰서 형사와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포차 앞 CCTV에 사건 전 과정이 촬영되어 있으니 압수해 달라"고 요청
- 포차 사장에게 연락하여 "경찰이 압수 영장 가져올 때까지 CCTV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
- 가능하면 포차 방문하여 사장에게 사정 설명 후 USB 복사 요청(증거 인멸 아님을 설명)

7.1.2. 제출 자료 준비

자료	목적	준비 방법
진단서 원본	이준호의 상해 입증	OO정형외과 발급 진단서(2026. 8. 23.)
상해 사진	상해 정도 시각적 입증	보관 중인 사진 3장 출력(날짜 표시 확인)
목격자 진술서	김태현 선제 폭행 입증	박서준에게 진술서 작성 요청(아래 양식 참조)
김태현 고소장	쌍방 사건화	폭행·상해 고소장 작성(아래 가이드 참조)
진술서(본인)	사건 경위 정리	아래 진술 요령에 따라 작성

7.1.3. 목격자 박서준 진술서 양식

박서준에게 다음 내용으로 진술서 작성 요청:

- 작성자: 박서준(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제목: 진술서
- 내용: "저는 2026. 8. 22. 22:40경 OO포차 앞에서 이준호 선배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이준호 선배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욕설을 하고, 이준호 선배의 먹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었습니다. 이준호 선배가 '놓으라'고 세 번 말했으나 김태현이 계속 먹살을 잡고 있어서, 이준호 선배가 양손으로 김태현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김태현이 넘어진 후 일어나서 이준호 선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위 내용은 제가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7.2. 진술 요령

7.2.1. 진술 원칙

- **일관성:** 사실관계 정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시간, 횟수, 행위 등)
- **정확성:**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
- **방어 의도 강조:** "먹살을 풀기 위해 밀었다",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였다"
- **감정 배제:** "화가 나서", "보복하려고" 같은 표현 금지

7.2.2. 예상 질문 및 답변 가이드

예상 질문	권장 답변	금지 답변
왜 밀었습니까?	"상대방이 제 먹살을 잡고 계속 흔들어서 먹살을 풀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밀었습니다"	"화가 나서", "똑같이 해주려고"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세 번이나 놓으라고 말했지만 계속 잡고 있어서 손으로 풀 수 없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상대방이 다칠 줄 알았습니까?	"먹살을 풀기 위해 밀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쳐도 상관없었습니다"
합의할 의향 있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저도 피해를 입었으므로 쌍방 합의를 원합니다"	"절대 합의 안 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겠습니까?	"네, 상대방의 폭행과 상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7.2.3. 진술 시 강조할 사항

1. **김태현의 선제 폭행:** "상대방이 먼저 제 어깨를 치고, 욕설을 하며, 먹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2. **제지 시도:** "'놓으라'고 세 번 말했지만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3. **방어 목적:** "먹살을 풀고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 밀었습니다"
4. **최소한의 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지 않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을 뿐입니다"

상해 의도 부인: "다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넘어질 줄도 몰랐습니다"

6. **이준호의 피해:** "상대방이 일어나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7.3. 김태현 고소장 작성 가이드

9. 10. 조사 시 함께 제출할 고소장 구성:

- **고소인:** 이준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김태현(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경찰에 문의하여 확인
- **죄명:** 폭행죄(형법 제260조), 상해죄(형법 제257조)
- **범죄사실:**
 1. 2026. 8. 22. 22:40경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어깨를 치고 욕설(폭행)
 2.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목살을 잡고 2회 흔들(폭행)
 3. 고소인이 3회 제지했으나 계속되어 방어 목적으로 밀침
 4. 피고소인이 일어나 고소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상해)
 5. 고소인이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팔 타박상 전치 2주 진단
-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선제 폭행 및 상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청
- **증거:** 진단서, 상해 사진, 목격자 박서준 진술서, CCTV(경찰 압수 예정)

7.4. 조사 당일 체크리스트

- 신분증 지참
- 제출 자료 일체(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서, 고소장) 2부씩 준비(경찰 제출용 1부, 본인 보관용 1부)
- 사실관계 정리서 재확인(시간, 횟수, 행위 등 숙지)
- CCTV 압수 여부 확인 및 미확보 시 재요청
- 조서 작성 후 반드시 내용 확인 후 서명(잘못된 내용 있으면 수정 요청)
- 담당 형사에게 "쌍방 사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

8. 종합 결론

8.1. 사건 전망

본 사건은 전형적인 쌍방 폭행·상해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됩니다:

시나리오	가능성	결과
CCTV 확보 + 맞고소 + 쌍방 합의	60%	양측 모두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전과 없음)
CCTV 확보 + 맞고소 + 합의 불발	25%	양측 모두 벌금 100~300만원(쌍방 과실 인정)
CCTV 미확보 + 맞고소 없음	10%	이준호 벌금 200~300만원(정당방위 입증 실패)
김태현 요구대로 500만원 합의	5%	이준호 기소유예, 500만원 손실(부당)

8.2. 권장 대응 전략(우선순위)

1순위: CCTV 긴급 확보(9. 5. 이전)

- 경찰에 압수 요청 + 포차 사장에게 보관 부탁
- CCTV가 확보되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 가능성 대폭 증가

2순위: 맞고소 제출(9. 10. 조사 시)

- 김태현에 대한 폭행·상해 고소장 제출
- 쌍방 사건으로 만들어 협상력 강화 및 정당방위 근거 확보

3순위: 쌍방 무합의금 취하 협상

- 김태현에게 "쌍방 사건이므로 합의금 없이 상호 고소 취하하자"고 제안
- 김태현이 거부하면 "당신도 처벌받을 것"이라고 통보
- 500만원 요구는 절대 수용하지 말 것(최대 200만원 이내)

4순위: 경찰 조사 철저 대비

- 진술 요령 숙지, 제출 자료 준비, 목격자 진술서 확보

8.3. 최종 조언

핵심 포인트:

1. 이 사건은 김태현의 선제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김태현의 500만원 요구는 과도하며, 쌍방 무합의금 취하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4. 맞고소를 통해 쌍방 사건으로 만들면 협상력이 크게 강화됩니다
5. 설령 벌금형을 받더라도 금고 이상이 아니므로 직장 해고 위험은 없습니다

주의사항:

- CCTV 보관 기한(9. 5.)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조치 필요
- 경찰 조사 시 감정적 진술 금지, 방어 목적 일관 강조
- 김태현과 직접 접촉 금지(협박·회유 시도 시 추가 범죄 성립 가능)
- 합의 협상은 경찰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

변호사 선임 필요성: 현재 단계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다음 경우 선임을 고려하세요:

- CCTV 확보 실패 시
-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 송치 시
- 김태현과 합의 협상이 결렬되고 재판 진행 시

변호사 선임 시 비용은 50~100만원(경찰·검찰 단계), 150~300만원(재판 단계) 예상됩니다.

판사 관점 판결 예측

판사 관점 검토 보고서

본 보고서는 2026년 8월 22일 발생한 폭행·상해 쌍방 사건에 대한 법률 분석 보고서를 실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 이준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인 김태현의 선제 폭행 책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1. 원고(피고소인) 주장의 설득력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 이준호는 고소인 김태현의 목살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장의 설득력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게 충족됩니다. 김태현이 이준호의 목살을 잡고 2회 흔든 행위는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하며, 이준호가 3회에 걸쳐 "놓으라"고 제지했음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목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침해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방어 의사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호가 여러 차례 구두로 제지한 후 물리적 행위에 나아간 점, 양손으로 가슴을 밀 행위가 목살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방어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상당성 요건입니다. 목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에 대해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 방어행위로서 상당한지가 핵심입니다. 판례는 방어행위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침해의 종류·정도·긴박성, 방어행위의 태양,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 목살 폭행은 생명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침해는 아니었고, 이준호가 선택한 방어수단인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법원 실무상 이러한 사안에서는 완전한 정당방위보다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로 보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황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 면책 조항 적용은 본 사건의 상황(포차 앞 인도, 22시 40분경, 주변에 사람 있음)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법리적으로 일응의 타당성이 있으나, 완전한 정당방위 인정보다는 과잉방위로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됩니다.

2. 증거의 충분성

본 사건의 핵심 증거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및 상해 사진, 112 신고 기록입니다. 각 증거의 증명력과 입증책임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CTV 영상은 본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고서에서 지정한 대로 2주 보관 기한(9월 5일까지)이 임박했으므로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CCTV에 김태현의 선제 폭행(어깨 치기, 목살 잡고 흔들기), 이준호의 제지 시도, 이준호의 밀침 행위, 김태현의 보복 폭행(얼굴 가격) 등이 순차적으로 촬영되어 있다면 사건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의 화질, 각도, 조명 상태에 따라 세부 행위(예: 목살을 잡은 힘의 정도, 이준호가 실제로 3회 제지했는지 등)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상만으로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목격자 박서준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박서준이 사건 전 과정을 목격했고 이준호와 함께 있던 동행인이라는 점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상당한 증명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진술이므로 법원은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포차 사장 최OO의 진술은 말리는 장면부터 목격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경위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부족하지만, 사건 후반부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양측의 진단서와 상해 사진은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양측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쌍방 폭행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 피해자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만 진단서상 '전치 2주'는 의사의 소견일 뿐 실제 치료 기간이나 후유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통원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추가 자료가 있으면 상해의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넷째, 112 신고 기록은 사건 발생 시각, 장소, 경찰 출동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신고 내용에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초기 진술로서 증명력이 높습니다.

입증책임 관점에서 보면,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이준호가 김태현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인 이준호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 정도로만 입증하면 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된다면 이준호는 이 입증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로는 이준호의 일관된 진술서, 사건 당시 음주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음주 측정 기록 등), 양측의 평소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대학 동아리 관계 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준호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지 않고 김태현만

신고했다면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방(고소인) 예상 반박

고소인 김태현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항변과 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먹살을 잡은 것은 경미한 접촉이었고, 이준호가 과도하게 반응하여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현은 자신의 행위를 최소화하고 이준호의 행위를 과장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무력화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반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먹살을 잡고 2회 흔든 행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명백한 폭행이며, 이준호가 3회 제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준호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과도한 것이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둘째, "이준호가 먼저 어깨를 부딪쳤거나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현이 자신의 선제 폭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준호가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CTV 영상이 결정적입니다. 영상에 김태현이 이준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장면이 명확히 나온다면 이 주장은 배척될 것입니다. 목격자 박서준의 진술도 중요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셋째, "이준호가 밀친 힘이 매우 강했고,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김태현은 이준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공격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의 성공 가능성은 CCTV 영상에서 이준호가 밀친 행위의 태양(양손으로 밀었는지, 주먹으로 쳤는지 등)과 김태현이 넘어진 상황(뒤로 밀려 넘어졌는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는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준호가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주먹이나 발로 가격한 것이 아니라면 상해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이준호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는 것은 반성이 없다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법리적 항변이라기보다 정서적 주장에 가깝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사과 여부나 맞고소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과 무관하며,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맞고소는 쌍방 폭행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고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섯째, "합의금 500만원은 적정하며, 이준호가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민사적 쟁점이지 형사책임과는 무관합니다. 법원은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합의 여부는 양형 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다만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이고 이준호도 동일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500만원 요구는 객관적으로 과도하며, 오히려 쌍방 무합의금 취하가 합리적입니다.

종합하면, 김태현의 예상 항변 중 법리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반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판결 예측

이준호에 대한 상해 혐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60% / 약식명령(벌금형) 가능성 30% / 정식재판 가능성 10%

김태현에 대한 폭행·상해 혐의(맞고소 시): 약식명령(벌금형) 가능성 70% / 기소유예 가능성 20% / 정식재판 가능성 10%

본 사건의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 예측: 이준호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김태현에 대한 맞고소를 제기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 사건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호에 대해서는 ① CCTV에 김태현의 선제 폭행과 이준호의 제지 시도가 명확히 촬영되어 있고, 목격자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60% 정도입니다. ② CCTV 영상이 불명확하거나 목격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다면 상해죄는 인정하되 초범, 피해 경미, 쌍방 폭행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할 가능성이 30% 정도입니다. ③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상해 결과가 명확하다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300만 원을 구형할 가능성이 10% 정도입니다.

김태현에 대해서는 선제 폭행자이고 이준호에게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합의 없이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70% 정도입니다.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20% 정도입니다.

재판 단계 예측: 만약 검찰이 이준호를 기소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상해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이준호가 김태현을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됩니다. 폭행의 고의로 행한 행위로 상해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0도4415 판결).

둘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형법 제21조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할 것입니다.

김태현의 먹살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준호가 3회 제지한 후 밀친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먹살 폭행에 대해 상대방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이 상당한 방어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방위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침해행위의 종류, 정도, 방위행위의 태양,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도8530 판결). 본 사건에서 먹살 폭행은 생명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을 초래할 정도의 침해는 아니었고, 이준호가 선택한 방어수단은 결과적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완전한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준호가 초범이고,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이며, 쌍방 폭행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형법 제59조)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셋째, 양형 참작 사유를 보면, 이준호에게 유리한 사정은 ① 초범(2019년 음주운전 벌금은 이중 전과로 양형에 큰 영향 없음), ② 김태현의 선제 폭행, ③ 쌍방 폭행 사건, ④ 피해 경미(전치 2주), ⑤ 방어 의도 등입니다. 불리한 사정은 ① 합의 없음(만약 합의를 거부한다면), ② 상해 결과 발생 등입니다. 종합하면 유리한 사정이 불리한 사정보다 많습니다.

최종 판결 예측: 이준호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정당방위를 주장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90% 정도입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더라도 과잉방위를 인정받아 선고유예 또는 벌금 150~200만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김태현에 대한 맞고소가 제기되면, 김태현은 선제 폭행자로서 이준호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쌍방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한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5. 판사 코멘트

본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법리 분석이 충실하고 실무적 조언이 구체적이어서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부분:

첫째, CCTV 영상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9월 5일 보관 기한이 지나면 이 사건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으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박서준이 이준호의 동행인이라는 점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경찰에 압수 요청을 하고, 포차 사장에게도 별도 보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둘째, 이준호가 3회 제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았다면, 목격자 박서준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박서준에게 진술서를 받을 때 "이준호가 '놓으라'고 세 번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포차 사장이나 주변의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준호가 밀친 행위의 태양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다"는 진술이 일관되어야 하며, 주먹으로 쳤거나 발로 찼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보인다면 문제없지만, 불명확하다면 목격자 진술과 이준호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넷째, 김태현이 넘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준호가 밀친 힘이 강해서 넘어진 것인지, 김태현이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인지,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등이 상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 사진(바닥 상태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약한 부분과 보완 방향:

첫째, 보고서는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40~50%로 평가했는데, 이는 다소 낙관적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정당방위를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며, 특히 상당성 요건에서 많은 사건이 배척됩니다. 목살 폭행에 대해 상대방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상당성을 초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정당방위보다는 과잉방위를 주장하는 것이 더 현실

적입니다. 과잉방위가 인정되면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변호 전략은 "완전한 정당방위"보다는 "최소한 과잉방위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보고서에서 형법 제21조 제3항(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황에서의 과잉방위 면책)을 언급했으나, 본 사건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 22시 40분경으로 야간이기는 하지만, 포차 앞 인도로 조명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준호가 공포나 경악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존하기보다는 제2항의 일반 과잉방위 감경·면제 조항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고서는 쌍방 무합의금 상호 취하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김태현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은 이미 500만원을 요구했고, 자신이 먼저 고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무합의금 취하에 응할 유인이 적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략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로 맞고소를 제기하여 김태현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2단계로 "쌍방 무합의금 취하"를 제안하되, 3단계로 김태현이 거부하면 "차액 정산 방식(이준호가 50~100만원 지급)"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김태현의 500만원 요구는 명백히 과도하므로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지만, 소액의 합의금으로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다면 이준호의 직장 생활과 향후 경력을 고려할 때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맞고소의 시기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9월 10일 경찰 조사 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는 적절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보복 목적이 아니라 사실관계 명확화 및 정당방위 입증 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에는 김태현의 선제 폭행(먹살 잡고 흔들기)뿐만 아니라 사후 폭행(얼굴 주먹 가격)도 함께 기재하여 김태현이 일관되게 공격적이었음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핵심 포인트:

첫째, 이준호가 밀친 행위의 상당성입니다. 법원은 "먹살을 풀기 위해 밀었다"는 주장이 진실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보복적으로 밀었다"는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① 이준호가 3회 제지한 사실, ② 양손으로 밀었다는 사실(주먹이나 발 사용 안 함), ③ 밀친 후 추가 공격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CCTV에 이준호가 밀친 후 물러서거나 손을 들어 제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방어 의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김태현의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입니다. 김태현은 우측 손목 염좌와 좌측 둔부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이준호가 밀친 행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김태현이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음주 상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만약 김태현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면 넘어진 것이 이준호의 밀침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112 신고 기록이나 경찰의 현장 조치 기록에 음주 상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쌍방의 과실 비율입니다. 법원이 쌍방 폭행 사건으로 판단한다면, 양측의 과실 비율을 평가할 것입니다. 보고서는 김태현 70%, 이준호 30%로 평가했는데, 이는 합리적입니다. 김태현이 선제 폭행자이고 이준호는 방어 중 과실이 있었다는 구도입니다. 다만 법원이 이준호의 과실을 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예: 50:50), 이에 대비한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이준호의 진술 일관성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 과정에서 이준호의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특히 ① 3회 제지했다는 점, ②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다는 점, ③ 맥살을 풀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은 절대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고 정당방위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본 사건은 CCTV 영상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CCTV가 확보되고 김태현의 선제 폭행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이준호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CCTV가 확보되지 않으면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맞고소는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보복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경위를 드러내고 쌍방 사건으로 만들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김태현의 500만원 요구는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며, 쌍방 무합의금 취하 또는 소액 차액 정산을 목표로 협상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맥살을 풀기 위해 밀었다", "더 이상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방어 의도를 명확히 하고, "화가 나서", "똑같이 해주려고" 같은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증거 확보와 진술 전략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CCTV 증거보전, 고소장 작성, 경찰·검찰 조사 동행, 합의 협상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의 직장과 향후 경력을 고려할 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AI 기반 분석

본 판결 예측은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